상표제도

글 · 한윤근 변리사 두레국제특허법률사무소

의 의

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, 가공,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① 기호 · 문자 · 도형 ·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, ②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(표장이라 한다)을 말하는데, 상표권은 이들 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되는 권리를 말한다.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표장의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다.

상표의 종류

가. 상표

° 유형의 상품에 사용

° 대상 : TV, 자동차, 화학물질, 의약품 등

※ 영리목적

나. 서비스표

° 무형의 상품(용역)에 사용

° 대상 : 은행업, 통신업, 운송업, 연예업 등

※ 영리목적

다. 단체표장

° 동업자,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

° 대상 : 상품 또는 서비스업(용역)

※ 영리목적

라. 업무표장

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

° 대상 : 상품 또는 서비스업(용역)

※ 비영리

상표의 등록요건

가.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

° 식별력 있는 상표

-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수요

자들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함.

나.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

1) 식별력이 없는 상표(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)

° 상품의 보통명칭

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함.(예 : 스넥식품-콘치프(CORN CHIP), 과자-호도과자, 자동차-CAR)

° 관용상표

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함. (예 : 과자류-깡, 청주-정종, 직물-TEX)

° 성질표시적 상표

- 산지표시 :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함.
  (예 : 사과-대구, 모시-한산, 굴비-영광)
- 품질표시 :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,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. (예 : 上, 中, 下, 특선, SUPER)
- 원재료표시 :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한 것을 말함. (예 : 양복-WOOL, 넥타이-SILK)
- 효능표시 :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함.(예 : TV-HITEK, 복사기-quick copy)
- 용도표시 :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함.
  (예 : 가방-학생, 의류-Lady)
- 수량표시 : 2컬레, 100미터 등
- 형상표시 : 당해 상품의 형상·모양, 크기, 작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. (예 : 소형, 캡슐, SLIM)
- 가격표시 : 100원, 1Dollar 등
- 생산방법·가공방법·사용방법표시 : 당해 상품의 생산·가공·사용 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함.
  (예 : 농산물-자연농법, 구두-수제, 책상-조립)
- 시기표시 : 당해 상품의 사용할 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.
  (예 : 타이어-전천후, 의류-봄·여름·가을·겨울)

° 현저한 지리적 명칭, 그 약어 또는 지도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이식된 지리적 명칭을 말함.
(예 : 금강산, 백두산, 충주호, 뉴욕 등)

° 흔한 성 또는 명칭

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을 말함.
(예 : 李氏, 金氏, 사장, 총장 등)

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

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함.
(예 : 123, ONE, TWO, Three, Beta(β) 등)

°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

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, 표어, 인사말 등

2) 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표

° 국기·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
대한민국의 국기·국장, 외국의 국기·국장,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·유사한 상표
국가·인종·민족, 종교단체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상표
- 국가, 인종, 민족, 종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

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
- YMCA, 적십자, KBS 등

° 공서 양속에 반하는 상표
- 실정법상의 질서, 국제신뢰, 일반사회질서를 그르치는 상표
- 인간의 존엄, 사회적 윤리, 공중도덕 등을 저해하는 상표

° 박람회의 상패·상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
- 박람회 등에서 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

° 저명한 타인의 성명·명칭·상호·초상·예명 등
- 현존하는 인물의 성명·명칭·상호·초상·예명 등을 말함.
- 타인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등록가능

°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

° 상표권 소멸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

°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
- 당해 상품에 속하는 거래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

° 저명상표
- 당해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이 속하는 거래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상표

° 품질의 오인 및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상표

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
- 국내 또는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에 편승하려는 상표

° 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 상표
- 상품의 형상 또는 상품의 포장자체를 상표로 사용(예 : 향수병, 포장BOX 등)

° WTO 가입국내의 포도주·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로 된 상표

주요제도

가. 단체표장제도

° 협동조합 등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

설립한 법인이 그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표장

° 소상인,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

나. 업무표장제도

적십자사, 보이스카웃 연맹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

다. 입체상표

°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표장을 상표로서 인정

°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가능

° 1998. 3. 1 이후 출원부터 인정

라. 다류 1출원제도

°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함께 지정하여 출원가능(상표는 하나임)

° 상품 및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가능

° 1998. 3. 1 이후 출원부터 적용

마. 선원주의

상표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등록을 허여

° 선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출원

- 포기, 취하, 무효된 출원 및 거절사정된 출원

바. 출원공고제도

° 심사 후 출원공고

° 공고기간 : 30일

° 이의신청 : 공고일로부터 30일내

차. 상표권 존속기간갱신제도

°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등록가능

° 존속기간만료전 1년이내(존속기간 만료후 6월이내에도 가능)에 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함.

카. 사용권제도

°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

° 사용권의 종류:

- 전용사용권 : 독점적 사용이 인정

- 통상사용권 : 독점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음

상표권의 효력

가. 효력

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독점

나. 효력제한

법 제51조에 의한 제한 등

상표권 침해 및 구제

가. 침해가 되는 행위

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
-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
- 상품에 표시하는 양도 또는 인도, 전시, 수출·수입하는 행위
- 광고, 정가표, 거래서류,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전시,반포하는 행위

나. 침해의 유형

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
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 또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,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

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, 교부,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

다. 침해에 대한 구제

° 민사상의 구제
-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
- 손해배상청구권
- 신용회복조치청구권
- 부당이득반환청구권

° 형사상의 구제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비 친고죄

심판

가. 거절사정 불복심판

상표등록출원인 거절사정된 경우 그 거절사정에 불복하는 심판

나. 무효심판

(등록무효, 지정상품추가등록무효,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)

° 상표등록, 지정상품추가 등을 무효로 하는 심판

° 지정상품마다 청구가능

° 소급효

다. 상표등록 취소심판

° 취소사유
- 등록상표를 3년이상 국내에서 불사용
-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

라. 권리범위 확인심판

° 상표권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는 심판

° 상표권(침해)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함.

소 송

타권리에 있어서의 소송과 같음.